

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31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8. 6. 17.

발의 의원 : 김진기 의원外 6인

1. 제안사유

-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용역”의 용어 정의를 구체화 함 (안 제2조)
- 나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함 (안 제3조)
- 다. 위원회는 예산편성전 용역의 필요성·타당성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토록 명시함 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함 (안 제6조)
- 마.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(안 제9조)
- 바. 용역성가로 시책 개발 등에 활용하여야 함 (안 제12조)
- 사. 예산의 범위내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명시함 (안 제13조)

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2조(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)
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의견 : 별첨
- ※ 안 제6조 : 당초 1건당 1천만원 ⇒ 변경(반영) 1건당 2천만원

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속초시가 시행하는 각종 용역의 사전 심의로 용역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용역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용역”이라 함은 시장이 시정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·연구·계획·조사·평가·시험·설계·감리 등의 업무를 말한다.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, 당연직위원은 4인 이내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전문분야 종사자 등 6인 이내로 한다.

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①당연직 위원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②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, 품위손상 등 기타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촉할 수 있다.

③위촉직 위원이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기능) 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
2. 용역사업비의 적정성
3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심의대상)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건당 2천만원 이상인 용역으로 한다. 다만,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.

제7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간사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담당부서 주무담당이 된다.

제9조(회의)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,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0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1조(결과조치 등) ①위원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,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용역결과 관리) 소관업무 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고, 기획감사실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「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